

고 발 장

고 발 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상임대표 문 규 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항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박천우, 하인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6층(서초동)

피고발인 1. 국방부장관 서 욱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2. 외교부장관 정 의 용
 3. 정 은 보
 4. 최 종 건
 위 피고발인 2, 3, 4의 주소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5. 김 상 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라 합니다)은 1994년 설립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 한미소파 개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변화시키는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전문적인 평화운동 시민단체입니다.

피고발인 1은 국방부장관으로 국가회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며,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피고발인 2는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장이며, 피고발인 3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협상대사로서 위 특별협정의 타결안에 서명한 당사자이고, 피고발인 4는 외교부 제1차관으로서 11차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한 당사자이며, 피고발인 5는 국방부 국제정책관으로서 11차 특별협정을 위한 이행약정에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2. 10차 및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과 제5조(주한미군 경비분담 원칙)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으로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협정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협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 처음 한미 사이에 체결된 이래 2~5년을 주기로 최근까지 10차례 체결되었습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19년 방위비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2019년 1년(2019.1.1.~2019.12.31.)이고, 2020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는 첫 회의를 2019. 9. 24~25. 가졌으나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2021. 3. 5.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한미는 2021. 3. 18.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가서 명하였는바, 한국 측의 협상대사인 피고 3과 미국 측의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체결하였습니다.

한미는 11차 특별협정에 같은 해 4. 8. 정식 서명하였는바, 정식 서명은 한국 측의 외교부 1차관인 피고 4와 미국 측의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하였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은 같은 날 한국 측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인 피고 5와 미국 측의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체결하였습니다. 이행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관 간 약정’으로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차 특별협정은 2020~2025년 6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년 협정인바, 2020년

과 2021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1조389억 원과 1조1833억 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의 매해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증가율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한 외교부·국방부의 거짓 발표 및 국고손실의 경위

가. 외교부와 국방부는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선집행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1)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2021. 3. 5. 타결되었는바, 타결 직후인 3월 9일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최종 타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증 제3호증 참조)를 냈습니다. 여기서 외교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1조389억 원)에서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선집행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홈페이지(재정자료공개/월별세입세출현황)에서 확인됩니다. 외교부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되었다고 발표한 만큼 한국은 기집행된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제외하고 2,938억 원을 추후 미국에 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3월 9일 보도자료에서 2,938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4,307억 원이 더 많은 7,245억 원을 미국에 향후 주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하기로 합의하였다”(보도자료, 2021.3.9.)고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외교부의 보도자료대로 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 원이고, 그것은 선지급된 인건비(한국인 근로자 생계지원금) 3,144억 원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해야 할 7,245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선지급된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고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도 선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3월 9일 보도자료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선집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평통사가 “국방부가 집행했다고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미측에 전달할 2020년 방위비분담금 7,245억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라고 정보공개청구한 데 대해서 외교부는 “국방부가 기집행한 약 4,307억 원은 7,245억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외교부의 2021.4.7. 답변)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외교부 답변은 3월 9일 외교부 보도자료가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2020년 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389억 원에 고의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외교부가 발표한 1조389억 원이 아니라 누락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포함하면 1조4,696억 원(선지급 인건비 3,144억 원+선지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미국에 추후 지급하기로 한

7,245억 원)입니다. 즉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 아니라 1조4,696억 원인바, 따라서 동결되었다는 당국의 발표는 거짓이고 실체는 41.5% 인상된 것입니다.

(2) 국방부는 2020년도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실질적으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이행 책임을 진 부처입니다. 또 국방부는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한국 협상단의 일원으로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피고발인 5는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이행 약정의 서명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되었다는 외교부의 거짓 발표에 총체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 11.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한미는 당일 “양측 협상단간 화상 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것과 함께 이 화상 회의에는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한측에서 외교부·국방부 및 미측에서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 2.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 8차 회의(화상)에 외교부, 국방부관계자가 참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여기서 "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측은 그 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

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 3. 5. 미국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인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9차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 자리에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협상 대표단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곤 2021. 3. 18.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가서명식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모하여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실제로는 1조4,696억 원인데도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됐다고 거짓 발표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4,307억 원의 부담을 더 지게 되었고, 한국은 그만큼 국고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되었다는 외교부의 거짓 발표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외교부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총액 1조389억 원에 인건비 3,144억 원은 포함시켜 계산하면서도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

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¹⁾

국방부가 2020년도에 집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인건비 3,144억 원과 똑같이 2020년도 세입(또는 수입)에 의해서 충당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다.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이중 부담을 강제하는 11차 특별협정 제2조의 불법부당성

11차 특별협정 제2조는 “2020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389억 원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조는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하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나머지 비용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란 금액으로 치면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을 지칭합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가 3월 9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입니다. ‘나머지 비용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란 방위비분담 구성 항목(categories)으로 치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지칭합니다.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추후 지급하기로 한 7,245억 원은 미국에 언제 지급 됩니까? 7,245억 원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각각 얼마씩 나누어서

1)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해설』, 2014, 40쪽.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배정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결정합니까?”라고 정보공개청구한 것(2021.4.13.)에 대해서, 국방부는 “7,245억 원은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7,245억 원)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이며, 11차 협정 및 이행약정에 따라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주한미군사가 최종 배정하게 됩니다”(2021.4.26.)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한국은 2020년에 인건비(3,144억 원) 이외에도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제2조의 규정대로 이행되면 한국은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이중으로 미국에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2020년에 선집행한 4,307억 원과 2021년 이후에 집행하게 될 7,245억 원을 합쳐 1조 1,552억 원이 됩니다. 실제 배정된 위 1조1,552억 원은 11차 특별협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 1조38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1차 특별협정 제2조를 위배하는 불법입니다.

또 11차 특별협정 제2조의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한)나머지 비용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하다”는 규정은 2020년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집행된 사실을 부정하고 미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용인될 수 없습니다.

라.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4,307억 원의 선집행액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 1조389억 원의 산정에서 누락시킨 것은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의

인상률 50%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에 국방부가 선지급한 것은 인건비 3,144억 원만이 아닙니다.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도 선집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외교부)가 선지급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인건비만을 인정하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선지급을 누락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과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 군사건설현물지원분 및 미지급 군수지원현물지원분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주장대로 설사 과거 8차, 9차, 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들 협정은 그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이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 평통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도 2020년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2020년도 본예산(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국방부가 편성한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군사건설비는 3,710억 원, 군수지원비는 1,6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음)에서 집행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특별협정의 체결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협정액이 과도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결과로 미지급금이 거의 매년 발생하였지만 미국이 미지급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한국도 미지급금을 지급한 전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선집행에 대해서 극구 8차, 9차, 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이유나 외교부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 계산에서 인건비만을 포함하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선집행액을 누락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트럼프가 한미 협상 대표가 2020년 3월 잠정합의한 13.6%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50%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미가 협상지연으로 사실상 11차 특별협정이 시작되는 첫해나 다름없게 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50%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은 2020년 대비 인상분 13.9%(1,444억 원)에다가 2020년에 선집행했지만 방위비분담금 계산에서 누락시킨 4,307억 원을 합하면 5,751억 원으로 10차 특별협정(2019년 1조 389억 원) 대비 55.4%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50% 인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산정(1조389억 원)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트럼프의 50% 인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4,307억 원을 2020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고 그럼으로써 4,307억 원에 이르는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4. 피고발인들의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의 범죄사실

가. 국고 등 손실죄의 주체 : '회계관계직원'의 구성요건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고 등 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등).

(2) 국방부장관 및 국제정책관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는바,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등).

결론적으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 1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국방부 국제정책관인 피고발인 5는 국방부장관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로 특가법 제5조의 적용대상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들은 특가법위반죄(국고 등 손실)의 공동정범에 해당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본질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모하여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2020년에 선집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방위비분담금 산정에서 고의로 누락하여 실제로 위 항목의 이중부담을 강제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한국측 협상안 정리와 협상 진행과 관철, 거짓 발표 및 방위비분담금 예산집행 등 총체적으로 국고손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발인들의 공동정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4) 진정신분범과 공범의 성립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

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항인바, 제1항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진정신분범)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 공범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 규정된 국고손실죄의 주체는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이므로 이 사건 특가법위반죄(국고 등 손실)는 형법상 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 및 국제정책관으로서 신분범의 신분자에 해당하는 피고발인 1, 5는 물론이고, 비신분자로서 이들의 행위에 가공한 외교부장관인 피고발인 2, 협정의 협상대사인 피고발인 3 및 협정에 정식서명한 피고발인 4는 특가법위반죄(국고 등 손실)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임무위배 행위

피고발인 1, 5는 2020년에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불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은 부당하게 4,307억 원의 이득을 챙겼고 우리 국고는 그만큼 손실되었습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11차 특별협정이 발효되면 방위비분담금의 집행관서로서 위 협정 제2조에 따라 2020년도분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7,245억 원을 미국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 2020년에 선집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과 선집행한 인건비 3,144억 원, 여기에 7,245억 원을 더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총 1조4,696억 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11차 특별협정 제2조에서 규정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 1조389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11차 특별협정을 어기게 됩니다. 나아가서 피고발인 1이 2020년도 미지급금 명목으로 7245억 원을 11차 협정 발효 뒤 미국에 지급하게 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 수준에서 동결되었다는 외교부의 발표가 거짓임이 확인됩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11차 특별협정 제2조에서 규정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을 제외하고서도 4,307억 원의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 2, 3, 4는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이끈 외교부의 핵심관리이고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되었다고 거짓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피고발인 2는 협상이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둔 2021. 2. 18.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미일이 일본의 방위비를 전년 수준으로 1년 유지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13%도 과도한 게 아니냐”고 묻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2020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연합뉴스, 2021.2.18.)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피고발인 2의 이런 국

회답변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되었다는 2021. 3. 9.자 외교부 보도자료에 19일 앞선 발언으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망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 계획적인 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이끈 외교부 고위관리들인 피고발인 2, 3, 4 및 11차 특별협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 고위관리들인 피고발인 1, 5의 임무위배 행위로 미국에게 최소 4,307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주었으며 우리 국민에게는 동액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 국고 등 손실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에 따라 한국은 최소 4,307억 원을 더 국고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이런 재정지출은 국민들의 조세수입 등으로 조달된 국고에서 나가는 것이 명백하고, 그 액수는 특가법의 국고 등 손실죄가 규정하는 ‘국고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 임무위배 및 국고 등 손실에 대한 인식

피고발인들은 2020년도에 인건비만이 선집행된 것이 아니라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이 선집행되었고, 11차 특별협정 2조에 따라 선집행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45억 원(1조389억 원-3,144억 원)을 향후 미국에 지급하게 되면 한국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며, 그 경우 주한미군 또는 미국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고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보조자로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공모하여 국민에게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과 인상률을 거짓 발표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인 미국 내지 주한미군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발인들의 상기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의 행위로 인한 국고의 손실액은 5억 원 이상이므로 특가법 제5조 소정의 국고 등 손실죄로 의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로 난항을 겪었고 우리 국민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불법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협상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사실대로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책임지고 협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4,307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자초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재정과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부담을 더는 것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국민을 기망하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배임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증 제1호증 | 한겨레 기사 |
| 1. 증 제2호증의 1, 2 | 각 오마이뉴스 기사 |
| 1. 증 제3호증 | 외교부 3월9일 보도자료 |
| 1. 증 제4호증 | 국방부 2021. 3. 세출예산운용상황(일반회계)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 1통 |
| 1. 대리인 선임계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 각 1통 |

2021. 6. .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 법

담당변호사 권 정 호

하 인 준

박 천 우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